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10. 17 선고 2024가단4893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9. 12.

판결 선고 2024. 10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"가" 부분 36m²를 인도하고,
나. 2023. 3. 25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김철환

별지